

##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홍성표 의원 <공동발의> 홍성표 의원 명노봉 의원 이기애 의원 맹의석 의원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성 의원 김미영 의원 전남수 의원 김은아 의원 안정근 의원 이춘호 의원 김희영 의원 홍순철 의원 김은복 의원 신미진 의원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	
아산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의원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	

###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3) 서면, 우편, 전자우편(asansicouncil@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